

연방 운전자 개인정보 보호법(18 U.S.C. §2721, et seq.) (“DPPA”)에 따라 차량 기록 조회를 규제합니다. 기록 요청자는 아래에 이니셜을 기재하여 DMV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인증합니다.

(기록 요청자는 해당 사항에 모두 체크해야 합니다.)

1. ___ 송달, 소송 대비 조사, 판결 및 명령의, 또는 법원 명령에 따른 시행 또는 집행 서비스 등 모든 법원 또는 기관에서의 모든 민사, 형사, 행정 또는 중재 절차에서 사용. (18 U.S.C. §2721 (b)(4))
2. ___ 청구 조사, 사기 방지 활동, 평가 또는 보험 인수 활동 등 보험사 또는 보험 지원 기관 또는 자체 보험 가입 단체의 사용. (18 U.S.C. §2721 (b)(6))
3. ___ 견인 또는 압수 차량 소유자에 대한 통지문 제공에 사용. (18 U.S.C. §2721 (b)(7))
4. ___ U.S.C. 타이틀 49, 챕터 313에 따라 고용주, 고용주의 중개인 또는 보험사가 필요로 하는 상업용 운전자의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보 획득에 사용. (18 U.S.C. §2721 (b)(9))
5. ___ 합법적 사업체 또는 사업체의 중개인, 직원 또는 계약업체의 일반 사업 절차에서의 사용, 단 다음에 한함—
 - (A) 개인이 사업체 또는 사업체의 중개인, 직원이나 계약업체에 제출한 개인 정보의 정확도 확인, (18 U.S.C. §2721 (b)(3)(A)) 및
 - (B) 제출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실이 아닐 때,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함, 단, 개인의 사기를 방지하거나 개인에 대한 합법적 구제책을 강구하거나 개인에 대한 채무 또는 선취 특권을 회수하기 위함. (18 U.S.C. §2721 (b)(3)(B))
6. ___ 뉴욕주 차량 및 교통법 제19A조 - 버스 운전자용 특수 요건에 따라 필요한 사용. (18 U.S.C. §2721 (b)(14))
7. ___ 뉴욕주 차량 및 교통법 제19B조 - 상업용 차량 운송업자용 특수 요건에 따라 필요한 사용. (18 U.S.C. §2721 (b)(14))
8. ___ 법원 또는 법 집행기관 등 모든 정부 기관이 업무 집행에 사용. (18 U.S.C. §2721 (b)(1))
9. ___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기관을 대신하여 행위하는 민간인 또는 민간 단체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 (18 U.S.C. §2721 (b)(1))
10. ___ 차량 또는 운전자 안전 사안에 사용. (18 U.S.C. §2721 (b)(2))
11. ___ 차량 또는 운전자 도난 사안에 사용. (18 U.S.C. §2721 (b)(2))
12. ___ 차량 또는 운전자 배기가스 사안에 사용. (18 U.S.C. §2721 (b)(2))
13. ___ 차량 제품 변경, 리콜 또는 자문 사안에 사용. (18 U.S.C. §2721 (b)(2))
14. ___ 차량 차량 부품 및 대리점 성능 및 성과 모니터링에 사용. (18 U.S.C. §2721 (b)(2))
15. ___ 설문조사를 포함하여 차량 시장 조사 활동에 사용. (18 U.S.C. §2721 (b)(2))
16. ___ 차량 제조사의 기존 소유자 기록으로부터 비소유자 기록의 삭제에 사용. (18 U.S.C. §2721 (b)(2))
17. ___ 민간 통행료 교통 시설 운영에 사용. (18 U.S.C. §2721 (b)(10))
18. ___ 기록 요청자가 정보 관련자의 서면 동의서를 얻었음을 증명할 경우 모든 기록 요청자의 사용. (양식 MV-15GC 사용 가능) (18 U.S.C. §2721 (b)(13))
19. ___ 기록 사용이 차량 또는 공공 안전 관리에 관련된 경우, 뉴욕주 법에 의거하여 특별히 허용된 사용. 해당 뉴욕주 법을 기재: _____ (18 U.S.C. §2721 (b)(14))
20. ___ 연구 활동 및 통계 보고서 작성에 사용, 단, 개인 정보를 게재 또는 공개하거나 개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데 사용하지 않아야 함. (18 U.S.C. §2721 (b)(5))

본인은 본인이 DMV의 기록 또는 정보를 수령하거나 접근 권한이 있는 경우 (i) 이러한 기록 또는 정보를 사적 이민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ii) 이러한 기록 또는 정보를 미국 이민관세수사청 및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등 주로 이민법을 집행하는 모 기관이나 이러한 기관의 직원이나 대리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공개가 이민법을 집행하지 않는 시, 주 및 연방 기관 간의 협력 약정에 따른 것일 경우, 그리고 공개가 이러한 약정에 따라 확인하는 특정 기록 또는 정보에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본인은 18 USC 2721(c)의 요건과 더불어 모든 사용처에 대한 5년 치의 기록과 인증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부서 기록 또는 정보를 수령한, 주로 이민법을 집행하는 각 개인 또는 단체의 식별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본인은 국장이 규정한 방식과 형태로 기록을 보관하며 국장의 요청 시 검사를 위해 이를 제시해야 합니다.

신청자 서명: **X** _____ 날짜: _____

(서명)

(정자체)

이 서면 진술서에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중요 사실을 은폐할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차량 기록에서 개인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사람에게는 운전자 정보 보호법(DPPA)에 따라 연방 형사 관련 범칙금이 부과됩니다.